



선 람	기 관 의 장

금정구 구보 호외 제 355-6 2020. 5. 20.(수)

(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)

입법예고

-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(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-631호) ----- 2

회람								
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-631호
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. 5. 20.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

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

2. 개정이유

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법규 등 운영에 있어 혼선을 없애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존속 필요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 비상설화 전환을 위해 조문을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제2조 (책무) 관련

- ▷ 제2조(책무)를 제2조(구의 책무)로 개정
- ▷ 외국인 등의 투표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조항 신설

나. 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관련

- ▷ 제2항 부의장 호선 규정 추가
- ▷ 제5항 심의회 의 구성요건 및 자동해산 규정
- ▷ 제7항 심의회 회의의 의결정족수 수정

다. 제16조(공표방법 등) 관련

- ▷ 공고의 인용조문에 법 제26조제1항을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(참조: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(전화:519-4112, FAX:519-41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자료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(<http://www.geumjeong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(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공지/입찰/고시 > 입법예고)

붙임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【붙임】
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책무)”를 “(구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”를 “부산광역시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「주민투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 등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주민투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”을 “법 제7조제1항”으로,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12분의 1 이상으로”를 “12분의 1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된다”를 “되며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”을 “의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찬성”을 “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”으로 한다.

2.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의원 중 1명

⑤ 심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단서 중 “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”을 “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”을 “제10조제4항,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책무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<u>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</u>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구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부산광역시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구청장은 「주민투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 등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「<u>주민투표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<u>다음과 같다</u>. 1. ~ 6. (생 략)</p>	<p>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<u>법 제7조제1항</u>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와</u>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투표청구 주민의 수)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<u>12분의 1 이상으로</u> 한다.</p>	<p>제5조(투표청구 주민의 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12분</u> <u>의 1로</u>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구의회 의원 중 1명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⑤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심의회의 회의는 <u>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<u>찬성</u>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⑧ ~ ⑩ (생략)</p> <p>제13조(처리기간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되며, <u>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중 1명</u>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.</u></p> <p>⑥ ----- <u>의장</u>-----.</p> <p>⑦ ----- <u>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</u>-----.</p> <p>⑧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처리기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